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외 국 인 투 자 촉 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6944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의 정의 명확화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외국인투자 인정
법개정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개정법에서 위임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함(안 제2조제2항 및 제7항)

1) 외국인이 직접 법인설립 또는 개인기업 설립 투자시에도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는 개정법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동일하게 용어를
정비함

2)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사용용도를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 신·
증설 용도로 사용’으로 규정함

나. 국가안보위해 여부 심의를 위해 개정법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국가정보원 차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신규 참여함에 따라 안보관련
사전검토 강화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등을 위한 주무부장관,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의 안보위해 여부 조사 내용 보고 규정 신설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 1) 외국인투자제한 내용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하 ‘국가핵심기술’이라 한다)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추가함
- 2)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내용이나 자료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법 개정으로 국·공유재산의 임대, 임대료 감면, 매각 및 매각해제 규정이 조문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임대, 매각 등으로 조문을 정비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규정된 현금지원요건을 법에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위임된 외국인투자비율을 규정하는 한편 ‘공장 신설·증설과 연구개발의 용도’를 추가함 (안 제20조의2 제1항 및 제4항)

- 1) 현금지원요건인 외국인투자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함
- 2) 공장시설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의 용도에 공장연구시설의 증설 및 연구개발 소요비용 등을 추가로 규정함
- 3) 투자금액에 비해 국내경제 미치는 영향이 큰 투자로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 또는 제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경우를 추가함

- 마. 현금지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시 취소·철회·감액·환수 하도록 하는 운영 요령(지침)의 규정을 법에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사유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20조의4 제1항 및 제2항)
- 바. 외국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동반가족 및 가사보조인에 대한 출입 사실증명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민원사무 처리 범위를 확대함(안 제24조제1항 별표3)
- 사.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대상 업종에 공연 시설, 박물관, 스포츠 시설 등 추가함(안 제25조 제1항)
- 아.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에서 규정된 입주계약 및 계약해지 사유 등 입주업체의 중요 권리·의무 사항을 상향 입법함(안 제26조)
- 자. 국제기구 제출용 통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이 연간 외국인 투자유출입 현황을 제출토록 규정함(안 제36조 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해당없음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상으로서”를 “이상이어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를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업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을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또는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및 4)를 각각 4) 및 5)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

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하 ‘국가핵심기술’이라 한다)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내용이나 자료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7항”을 각각 “법 제1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7항제1호”를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중 “제6항제1호가목”을 “제5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제6항제1호다목”을 “제5항제1호다목”으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목 3) 및 같은 호 나목 중 “제6항제1호라목”을 각각 “제5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중 “제6항제1호다목”을 “제5항제1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제6항제1호라목”을 “제5항제1호라

목”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제6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6항제1호가목”을 “제5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 2호 중 “법 제13조제7항제2호”를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제19조제8항 중 “법 제13조제8항”을 “법 제13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8항”을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법 제13조제9항”을 “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9항”을 “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제10항 및 제11항”을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제9항 또는 제10항”을 “제8항 또는 제9항”으로,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항”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법 제13조”를 “법 제13조부터 제13조의4”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국유·공유재산의 매각 및 해제 등)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② 법 제13조의3 및 법 제13조의4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매각 및 해제 등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대통령이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은 100분의30을 말하며, “공장시설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소재·부품·장비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를 “법 제14조의2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이나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 또는 제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의 취소·철회·감액·환수 등)

① 법 제14조의2제5항의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현금지원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기간 중 회사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경우

② 신청인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철회·감액·환수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라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연법」 제2조의 공연장 시설

마.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 박물관 및 미술관

제26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5항”을 “법 제18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입주 등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하며, 임대차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내에서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 등에 관한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입주기업이 임대받은 부지 또는 건물 및 시설을 임의로 매각, 대여, 교환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4. 입주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6. 입주기업이 1년 이상 임대료 납부를 체납한 경우
7. 그 밖에 입주기업이 법률 위반 또는 중대한 입주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입주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한국은행총재는 외국인투자자금의 매월 유출입 현황과 국제기구 통계작성 기준에 부합하는 연간 외국인투자 유출입 현황을 각각 다음 달 10일 및 다음 연도 10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3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사실증명 발급 및 열람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즉시
------------------	---------------	----

부 칙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① (생략)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u>이상으로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 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 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 투자로 본다.		② ----- ----- --- <u>이상이어야 하며</u> , ----- ----- ---. ----- ----- ----- ----- ----- ----- -----.		
1. 외국인이 <u>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또는 <u>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u> 발행한 의결 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 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 는 것		1. ----- <u>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또는 <u>기업이</u> ----- ----- ----- ----- ---		
2. 외국인이 <u>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 업의</u>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2. ----- <u>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u> ----- -----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③ ~ ⑥ (생략)

<신설>

⑦ ~ ⑪ (생략)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또는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⑧ ~ ⑫ (현행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① -----

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가 법 제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국가의 안전유
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하 “국가안보위해”라 한다)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검토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
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 것으
로 결정한 사항

가. (생략)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1)·2) (생략)

<신설>

3)·4) (생략)

② ~ ⑥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주무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
의 장-----

가. (현행과 같음)

나. -----

1)·2) (현행과 같음)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이하 ‘국가핵심기술’이라
한다) 등의 유출 가능성
이 높은 경우

4)·5) (현행 3) 및 4)와 같
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 ⑩ (생 략)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내용이나 자료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 ⑪ (현행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⑥ 법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1. 2. (생략)

⑦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1. 법 제13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다음 각 목에 따른 감면율
가.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

⑤ 법 제13조의2제1항 -----

-----.

1. 2.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3조의2제1항-----

-----.

1. 법 제13조2제1항제1호-----

가. -----

00분의 100

1)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
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
는 사업 및 제6항제1호나
목의 사업

2)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소재·부품전문기
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재·부품을 생
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
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
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0명 이
상을 고용하는 사업

나.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1) 제5항제1호가목-----

2) 제5항제1호다목-----

- 「소재·부품·장비산
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
별조치법」 제2조제1호-

3) 제5항제1호라목-----

나. 제5항제1호라목-----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90다.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1)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
[가목 2)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2)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3) 제6항제2호의 사업

라.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2. 법 제13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다. -----

1) 제5항제1호다목-----

2) 제5항제1호라목-----

3) 제5항제2호-----

라. 제5항제1호가목-----

2.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

⑧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이 정한다.

⑨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8항
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
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
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
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
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
관서의 장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⑩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
업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⑪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
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⑫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규정

⑦ 법 제13조의2제2항-----

-----.

⑧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
항-----

-----.

⑨ 법 제13조의2제3항-----

-----.

⑩ 법 제13조의2제3항-----

-----.

1. 2. (현행과 같음)

⑪ 제9항 및 제10항-----

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을 등 세 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⑬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국가 소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은 국유재산 소관 중앙 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항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⑭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

⑫ 제8항 또는 제9항-----

--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

-----.

⑬ 법 제13조부터 제13조의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

-----.

제19조의2(국유·공유재산의 매각 및 해제 등) ① 법 제13조의3 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② 법 제13조의3 및 법 제13조의4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매각 및 해제 등에 관하여 법 및 이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

금지원의 용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 5. (생략)

②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이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부품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신설>

금지원의 용도 등) ① -----

-- “대통령이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은 100분의30을 말하며, “공장시설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3호-----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③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

④ 법 제14조의2제1항제6호-----.

1. · 2. (현행과 같음)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이나 「산업발전법」 제5조제1

<신 설>

항에 따른 기술 또는 제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의4(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
금 지원의 취소·철회·감액·
환수 등) ① 법 제14조의2제5항
의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
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
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현금지원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기간 중 회사의 부도 또
는 폐업 등으로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경우

② 신청인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철회·감액·환수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공연법」 제2조의 공연
장 시설

마.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
조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라. ~ 바. (생략)

3.·4. (생략)

② ~ ⑮ (생략)

제26조(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법」 제2조의 박물관 및 미술관

사. ~ 자. (현행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3.·4. (현행과 같음)

② ~ ⑮ (현행과 같음)

제26조(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① 법 제18조의3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입주 등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하며, 임대차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내에서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 등에 관한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입주기업이 임대받은 부지 또는 건물 및 시설을 임의로 매각, 대여, 교환하는 등 처분 행위를 한 경우

4. 입주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신 설> <신 설> 제36조(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①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6. 입주기업이 1년 이상 임대료 납부를 체납한 경우 7. 그 밖에 입주기업이 법률 위반 또는 중대한 입주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입주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6조(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① 한국은행총재는 외국인투자자금의 매월 유출입 현황과 국제기구 통계작성 기준에 부합하는 연간 외국인투자 유출입 현황을 각각 다음 달 10일 및 다음 연도 10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연 락 처	(044) 203 - 4073